

● 제298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6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동의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0. 11. 30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 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2008

## I. 동의안 개요

### 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0. 10. 16.
- 다. 회부일 : 2020. 10. 26.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·조정·지원 등 총괄기능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서
- 여성인력개발기관(여성발전센터, 여성인력개발센터)의 총괄 조정 기능과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·홍보·컨설팅 등 지원, 효율적인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
-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·운영을 추진

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제4조의 3의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
- (2)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 및 관리 일체
  -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·조정·평가 지원
  -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·창업 촉진 사업 추진
  - 여성인재양성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·시행
  - 여성유망직종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·보급
  - 여성인력개발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- (3) 위탁시설 개요
  - 시설명: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
  - 소재지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, 포스트타워 7층
  - 시설규모: 전용면적 590㎡
    - 공간구성: 사무실, 회의실, 교육장 등
  - 운영인력: 11명 내외(원장 1명, 팀장 2명, 팀원 8명)
    - 2개팀(기획팀, 사업팀)
  - ※ 세부 조직 및 운영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협의하여 구성
- (4) 위탁기간 : 최대 3년(2021. 1. 1. ~ 2023. 12. 31.)
- (5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- (6) 소요예산 : 금3,991,731천원(2021년 예산안)
  - 인건비: 567,041천원, 운영비: 576,812천원, 사업비: 3,096,178천원

(7)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 2
-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
- 서울특별시 운영방식 개선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 
(여성정책담당관-10852호, 2020. 7. 16.)

(8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·운영을 통해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, 효율성 강화,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.

다. 참고사항

(1)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2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7. 30., 2012. 12. 31., 2014. 5. 14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 <2014. 5. 14.>

[제목개정 2009. 7. 30., 2014. 5. 14.]

**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**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-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, 제25조

**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**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3. 여성능력개발원 :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·조정·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**제7조(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)**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와 같다.

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
2.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·조정·평가 및 지원
3.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·창업 촉진 사업 추진
4.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

**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**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(2)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안 제출

※ 예산은 예산편성(심의)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

(3)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(4) 기 타

○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제출

○ 2020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: 적정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

- 동의안은 여성능력개발원의 관리·운영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<sup>1)</sup>에 따라 민간 위탁 재위탁<sup>2)</sup>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여성능력개발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·조정·평가 지원
  -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·창업 촉진 사업 추진

- 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9. 3. 28.>
- 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- 여성인재양성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·시행
  - 여성유망직종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·보급
  - 여성인력개발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- 여성능력개발원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제33조<sup>3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제28조<sup>4)</sup>,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7조<sup>5)</sup>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시설로, 서울시의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총괄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정·평가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,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·운영 중임.

- 
- 3)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33조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 
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(이하 "여성인력개발센터"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 
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·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 
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,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 
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,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4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28조(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5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)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와 같다.  
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  
 1.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 
 2.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·조정·평가 및 지원  
 3.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·창업 촉진 사업 추진  
 4.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
 5.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



<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개요 >

- 현수탁법인 : 재단법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(대표 백미순)
-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'21.1.1.~'23.12.31.)
  - ◁ 1차 공개모집 '08.5.1. ~ '11.4.30.((재)서울시여성가족재단)
  - ◁ 2차 재 계약 '11.5.1. ~ '14.9.30..((재)서울시여성가족재단)
  - ◁ 3차 공개모집 '14.10.1. ~ '17.12.29.((재)서울시여성가족재단)
  - ◁ 4차 공개모집 '17.12.30. ~ '20.12.31.((재)서울시여성가족재단)
- 사업예산 : 4,829,977천원('20년기준)
- 위탁유형 : 사무형 민간위탁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 및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(시장)은 능력 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(여성관련시설)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
  -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·조정·지원 등 총괄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-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<sup>6)</sup>에서

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7)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,

-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정책 총괄 추진 체계로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.

### 3 종합 검토 의견

- 동 위탁 사무는 여성의 취·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 등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위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으로,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.

6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7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####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○ 다만,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일자리 기관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하여 업무 통폐합 및 조직개편 필요하며, 직원의 잦은 이직 및 퇴직으로 기관의 업무수행 불안정 심화되고 있으며, 직업훈련의 단순 사업공모 과정 비율이 높고 직접수행 사업 실적 저조하다는 의회의 반복적인 지적과 저조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, 운영방식 개선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마련 노력이 촉구된다 할 것임.

※ 2017년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에서 미흡점수인 59.72점을 받아 재위탁 공모조건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었으며, 2020년 민간위탁 운영평가에서도 “장기적으로 여성능력개발원의 사무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”는 조건부적정 결과를 받은 바 있음.

○ 또한 여성일자리 기관의 총괄기능의 경우, 그 사무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위상과 권한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, 향후 이점에 대한 한계 극복을 위하여 민간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추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교한 정책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고 사료됨.